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비치 장부 중 ‘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제외(안 제2조의2 별표)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비치 장부 중 ‘비품수불대장’ 제외(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 “제1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9호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27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joo@korea.kr
-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 3) 팩스 : 02-2100-6093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02-2100-6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월드와이즈월(박종철) ② 한국세라믹기술원(유광수)
- 나. 전화번호 : ① 031-221-3000 ② 055-792-2462

2. 명칭 : 중소형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 적용 외벽 화재확산 방지구조 시공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마감 / 단열

<기술의 요지>

본 기술은 노유자, 장애인, 학생 등 피난 취약자가 사용 건축물 중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2,000m² 이하 또는 6층 미만인 중소형 건축물의 외벽 단열층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건축물 개구부 상단 45도 이상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L형 브라켓, 앵글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구조벽체에 연속 밀착 고정하여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화재 우려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재발생시 분출되는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이다.

<범위>

노유자, 장애인, 학생 등 피난 취약자 사용 건축물 중 해당용도 사용 바닥면적의 합계 2,000m² 이하 또는 6층 미만인 중소형 건축물에 경량 세라믹 불연 단열재를 개구부 상단 45도 이상 및 층 사이에 수평으로 L형 브라켓, 앵글 및 전용 모르타르를 이용, 화재확산 방지구조를 형성하고, 비 불연성 단열층은 두께 5mm 이상 전용 모르타르로 마감하여 화염 및 고온에 의한 외벽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외단열 시공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 단지내 유희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주차수입을 관리비 경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허용(안 제4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신설)

- 1) 임대사업자는 주차장 개방 및 세부 운영기준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정한 후, 과반수 임차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최종결정
- 2) 무분별한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공이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